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0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2

I. 개요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25.
- (3) 회 부 일 : 2024. 10.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중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20)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요건 : - 40%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 1인당 납입액이 연 600만원 이하 ○ 특례내용 :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 <u>(가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가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u>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u>(가입일 기준) 2027년 12월 31일</u> (김주영의원안)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김주영의원안 2024. 10. 25. 제출(의안번호 490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혹은 3년(김주영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제도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으로 한정)하는 사람에 대해 그 납입 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로,
청년의 중장기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 되었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구 분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격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
	소득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운용	투자자산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의무가입 기간	3년 ~ 5년
혜택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연 600만원 한도)

□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혹은 3년(김주영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회 세법개정 으로 근거가 마련된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실제 상품 출시일이 상품 판매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2023년 1분기로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청년형 장기펀드의 출시를 인지하고 가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제도 운용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할 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도 실적은 10억원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각각 14억원, 16억원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 다만, 청년층의 경우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²⁾ 동 상품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2) 국내 한 증권회사에서 실시한 조사(모티즌인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2022.12.26.)에 따르면
- MZ세대가 경험해 본 금융상품은 예적금·청약(84.6%), 주식(직접투자) 63.5%, 보험(연금 포함) 44.3%, 가
상자산 30.8%, 펀드(간접투자) 28.4% 순으로 조사됨